



의안번호	제 100 호
------	---------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구본선 의원 외 4명
제출연월일	2017. 11. 17.

#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00호
----------	-------

발의연월일 : 2017. 11. 17.  
대표발의자 : 구본선  
공동발의자 : 이금자, 윤예중, 김만중,  
민병춘

## 1. 제안이유

-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006(2017.10.31.)호
-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구금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
- 나. 안 제9조(준용규정)를 안 제10조(준용규정)로 개정

##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4. 부서 협의결과 : 관계부서 검토의견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로 주민의견 수렴
- (2) 예고기간 : 2017. 11. 22. ~ 2017. 11. 26.(5일간)
- (3)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구 본 선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

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참고 2****도내 시·군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관련조례 정비 현황**

시·군	조례 정비완료 (시행일)	비고	시·군	조례 정비완료 (시행일)	비고
논산	미정비		서천	2017. 03. 30	
계룡	2017. 02. 28		아산	2016. 12. 15	
공주	미정비		예산	2016. 12. 23	
금산	2016. 12. 30		천안	2017. 01. 02	
당진	2017. 01. 01		청양	2017. 08. 09	
보령	2016. 12. 20		태안	2017. 04. 21	
부여	2017. 01. 01		홍성	2016. 12. 30	
서산	2016. 06. 10				